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서준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0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서준오, 김영철, 김원태,
도문열, 문성호, 박강산,
박승진, 박철성, 서상열,
아이수루, 이영실, 이용균,
, 이은림, 이종태, 정준호,
홍국표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상황에 따라 통학 거리가 멀거나 도보로 통학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통학로 상황이 좋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함.
 - 현재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스쿨버스 지원 사업은 없으나 서울시에서는 희망 초등학교에 대해 선정하여 '24년 기준 51개교에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청 차원에서 스쿨버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라.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마. 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안 제6조)
- 바. 안전교육 등(안 제7조)
- 사. 전문기관 등 자문(안 제8조)
-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등을 말한다.
4.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학차량 공동활용”이란 등·하교와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하여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통학 지원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
4. 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 방안
5.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실시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학차량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별 통학차량 운영 대수 및 이용 현황
2. 통학차량 안전 관리 대책 및 준수 여부
3. 학생 통학로 안전 현황
4. 그 밖에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간의 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선 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장과 통학차량 운전자, 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등 자문) 교육감은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통학차량 운영 비용 산정 등 통학 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경찰청 등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 학교별 통학버스 지원비용 발생 단, “통학차량 공동활용”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제5조 (실태조사 등)	○	◦ 전문 용역기관을 통한 실태조사 비용 발생
3	제7조 (안전교육 등)	○	◦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 발생
4	제8조 (전문기관 등 자문)	△	◦ 별도의 자문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발생했수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비용추계 곤란
5	제9조 (협력체계 구축)	×	◦ 서울특별시, 자치구, 경찰청 등 공문 및 내부 통신망을 통해 운영할 수 있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 초·중·고 학교별 통학차량 지원비용 발생
2	제5조(실태조사 등)	○	◦ 전문 용역기관을 통한 실태조사 비용 발생
3	제7조(안전교육 등)	○	◦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 발생

나. 전제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전제함
 - ※ 다만, 향후 수요조사를 통하여 통학버스 운행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수는 변동될 수 있음
 - ※ 특수학교 및 공립 유치원은 기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통학거리, 학생수, 차량규모, 운행일수, 시간, 노선, 탑승 대상 등은 학교 상황에 따른 자율 결정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통학차량 운행사고나 학부모간 갈등 등을 이유로 운행에 미온적일 경우 비용이 감소할수 도 있음
- (지원방법) 통학버스, 실태조사, 안전교육 등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지원
 - 통학버스 : 35인승 버스, 1일 5시간 이내, 연간 190일 이내 임차 방식 전제
 - 실태조사 : 1차년도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이후 매년 만족도 조사는 기존인력을 활용
 - 안전교육 등 :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연1회 안전교육 실시
-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366,422,655천원 (연평균 73,284,531천원)
- = 통학차량 운영비 + 실태조사 + 안전교육 등
- = 363,900,155천원 + 45,000천원 + 2,477,5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72,780,031	72,780,031	72,780,031	72,780,031	72,780,031
○ 제5조(실태조사 등)		45,000	-	-	-	-	45,000
○ 제7조(안전교육 등)		495,500	495,500	495,500	495,500	495,500	2,477,500
소계(a)		73,320,531	73,275,531	73,275,531	73,275,531	73,275,531	366,422,655
수입	-						
	소계(b)						
□ 총 비용(a-b)		73,320,531	73,275,531	73,275,531	73,275,531	73,275,531	366,422,655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대상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 초·중·고 학교별 통학차량 지원비용 발생
2	제5조(실태조사 등)	○	◦ 전문 용역기관을 통한 실태조사 비용 발생
3	제7조(안전교육 등)	○	◦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366,422,655천원 (연평균 73,284,531천원)
- = 통학차량 운영비 + 실태조사 + 안전교육 등
- = 363,900,155천원 + 45,000천원 + 2,477,5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72,780,031	72,780,031	72,780,031	72,780,031	72,780,031	363,900,155
	○ 제5조(실태조사 등)		45,000	-	-	-	-	45,000
	○ 제7조(안전교육 등)		495,500	495,500	495,500	495,500	495,500	2,477,500
	소계(a)		73,320,531	73,275,531	73,275,531	73,275,531	73,275,531	366,422,655
수입	-							
	소계(b)							
□ 총 비용(a-b)			73,320,531	73,275,531	73,275,531	73,275,531	73,275,531	366,422,655

① 통학차량 지원비용 = 363,900,155천원

$$= \text{초중고등학교 중 국·공립학교 수} \times \text{연간 차량 운영비} \times 5\text{년}$$

$$= 991\text{개교}^1) \times 73,441\text{천원} \times 5\text{년}$$

- 차량 연간 운영비 = 73,441천원 (1대당 기준 평균비용)

$$= \text{운전자 인건비(1명)}^2) + \text{운영경비(임차료, 유류비 등)}^3) + \text{동승보호자인건비(1명)}^4)$$

$$= (\text{초 등}) 30,104\text{천원} + 36,058\text{천원} + 14,559\text{천원} = 80,721\text{천원}$$

$$= (\text{중·고}) 30,104\text{천원} + 36,058\text{천원} = 66,162\text{천원}$$

▶ 산출방식 : 운전자(동승보호자)인건비는 월 3,010천원 × 10개월(190일) = 30,104천원

※ 2024년 서울시예산서 중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참고 [붙임 2]

1) 2023.4.1.기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 1,364개교(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포함)

구분	추계대상	계	초	중	고	기타	특수학교
계	991	1,362	604	389	321	16	32
국공립	991	991	566	280	121	10	14
사립	-	371	38	109	200	6	18

※ 특수학교는 기존 직영 또는 임차 방법으로 기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운전자 인건비는 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급여총당금으로 구성되며 월 3,010,482원으로 10개월간으로 산정

3) 운영경비는 유류비+인건비+경비(보험료, 감가상각비 등)+기타운영비로 구성됨 월 3,605,868원으로 10개월간으로 산정

4) 동승보호자인건비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3항가목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경우 해당되며, 월 1,455,988원으로 10개월간으로 산정

※ 2021년 초중등교사 연간 수업 주수·일수

(단위 : 주, 일)

구분	연간 수업 주수				연간 총 법정 수업일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직업계			일반계	직업계
2021년	38	38	38	38	190	190	190	190

② 실태조사 등 용역비 = 45,000천원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서 중 '학교폭력실태조사' 참고 [붙임3]

③ 안전교육 등 = 2,477,500천원

= 초·중·고등학교 중 국·공립학교수(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 안전교육비(연 1회) × 5년

= 991개교 × 500천원 × 5년

(붙임1)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번호	자치단체	조례명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3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4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5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6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7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8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10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12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15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16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붙임 2)

□ 2024년 서울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예산내역

사업명	세부내역	예산액(천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 스쿨버스 안전교육 500,000원*53차량 = 26,500천원	4,304,840
	○ 스쿨버스 운영경비 3,605,868원*53차량*10월 = 1,911,111천원	
	○ 스쿨버스 운전자 인건비 3,010,482원*53차량*10월 = 1,595,555천원	
	○ 스쿨버스 동승보호자 인건비 1,455,988원*10월*53차량 = 771,674천원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 2024년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실태조사' 예산 내역

사업명	세부내역	예산액(천원)
학교폭력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 학교폭력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서비스 = 45,000천원	45,000

자료: 2024 서울시교육청 예산서